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8월 27일 04기 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년 09월 23일 05기 0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년 11월 05일 2022 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6년 01월 24일 2026년 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각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표단

제2조(대표와 부대표)

-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 ② 당에는 대표 2인과 2인의 부대표를 둔다.
- ③ 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대표 직속 부서로 비서실과 대변인실을 둔다.
- ⑥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대표의 권한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의 대표가 합의하여 행사한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 ⑦ 대표 궐위 시 부대표의 권한 대행의 순서는 추첨순으로 한다.
- ⑧ 대표단 전원이 궐위될 경우 권한을 대행할 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전국위원회 소집은 전국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전국위원 중 대표발의자가 소집한다.

제3조(대변인실)

- ① 대변인실은 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 ②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 정리 업무
 2. 언론분석 지원 업무

3. 대변인실의 재정과 사무, 기자실 및 시설물 관리 업무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제4조(상임집행위원회)

- ①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3. 당직자에 대한 인사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 ④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3. (2026.01.24. 삭제)
 4.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상임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6.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 보관한다.(2026.01.24. 개정)

제5조(확대집행위원회)

- ① 확대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성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회 소속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확대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 ③ 확대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집행위원회)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부 대표자,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2026.01.24. 개정)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격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2인 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3.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중 전당적 집행이 필요한 주요 안건 결정

제3장 사무총국

제7조(구성) 사무총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각 부서로 구성한다.

제8조(사무총장, 사무부총장)

- ① 사무총장은 당무 집행 전반을 책임진다.
- ② 사무총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안건을 최종 정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③ 사무총장은 중앙당 전 부서의 업무 조정과 집행을 위해 각 부서책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시도당 사무처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고 사무총장의 궐위 시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9조(각 부서 및 업무 분장)

- ① 사무총국의 각 부서 및 기본업무 분장내용의 세부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

- ① 중앙당 집행회의는 사무총국의 각 부서 실장 및 정책실장, 대변인, 비서실장이 참여하며 사무총장이 주1회 이상 소집, 주재한다.
- ② 기타 세부 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사)

- ①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2026.01.24. 개정)
- ② 사무부총장, 각 부서장인 실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한다.
- ③ 사무총국 성원 중 국장, 부장에 대한 인사는 사무총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4장 사업위원회

제12조(구성) 당의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14조(구성) 특별위원회 및 본부는 특정시기별 필요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해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위원장 및 본부장은 상임집행위원회가 임면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부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진보신당연대회의'에서 설치한 부문위원회는 2014년 9월 말까지 제16조 4항의 요건을 갖춰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3조(개정사항 적용 시점에 따른 경과조치) 당현 부칙 제4조에 부수되는 대표,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의 선출 및 권한 등은 당현 부칙 제4조로 정한 적용 시점 전까지는 이 당규 개정 직전의 당규를 적용한다. 기타 당규의 해당 사항도 동일하다.

제4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 특례) 본 규정 제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6월말까지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